■ 「도로교통법」 시행규칙 [별지 제81호서식] <개정 2025. 6. 4.>

보내는 사람

우체국
요금후납

받는 사람

행정우편

---------- 접 는 선 ----------

년 호

운전면허([]정지 · []취소)처분 사전통지서

주소

성명(회사명)

출석요구일 년 월 일

---------- 접 는 선 ----------

귀하가 아래와 같이 운전면허 정지대상(취소대상)이 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○○○경찰서(교통관리계 · 민원실)로 운전면허 정지 · 취소처분 사전통지서, 운전면허증(분실 시 다른 신분증)을 지참하시고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확인내용 :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정지 일간

1) 토요일 · 공휴일은 휴무입니다(출석요구 기간 마지막 날이 휴무일인 경우 다음 평일까지 가능).
2)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,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3) 이 사전통지는 운전면허(정지 · 취소) 처분 전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안내로서, 운전면허(정지 · 취소)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인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아니며, 운전면허(정지 · 취소)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○○경찰서장 직인

안내전화: 담당자 ○○○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